

배포 일시	2022. 11. 26.(토)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6일 17시 기준 상황

###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화물연대 동향

- 현재 5,000명(전체 조합원의 22.7%)이 14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은 4,600명 감소

### □ 항만 등 물류 동향

-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7%)은 평시(`22.10월, 64.5%) 수준이나, 금일 10시부터 금일 17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929TEU로서, 평시(36,655TEU) 대비 19% 수준으로 크게 감소(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지장이 생겨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

-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 발생
  -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 연대 조합원이므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 차질 우려
- ⇒ 3일째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 주요 조치사항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시 경 포항지역을 방문해 포스코 등 철강업계 물동량 처리현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정상 운송 참여를 지속 독려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6시 30분 경 군산항 인근 사료창고 현장을 방문해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 관계기관 상황 점검 회의(17:00) (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 향후 계획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 머물면서 화물 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를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

##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6. 17: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금일 10시~17시 반입 (C)	금일 10시~17시 반출 (D)	금일 10시~17시 반출입 (C+D)	전일 10시~17시 반출입 (E)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7시 (B)	전일 (17시)	금일 17시 (B/A)	전일 (17시)	평시 ("22.10)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600,045	601,537	63.7	63.9	64.5	3,724	3,205	6,929	10,451	19,448	17,207	36,655
부산항	592,335	398,867	398,845	67.3	67.3	68	3,228	2,635	5,863	8,406	10,984	9,408	20,392
인천항	112,921	85,595	85,729	75.8	75.9	76.3	444	388	832	1,661	4,339	3,787	8,126
광양항	110,856	69,306	70,105	62.5	63.2	61.4	0	0	0	38	2,260	2,365	4,625
평택· 당진항	39,281	19,403	19,856	49.4	50.5	59.3	12	31	43	34	860	746	1,606
울산항	29,464	14,433	14,469	49.0	49.1	55	0	0	0	2	614	514	1,128
군산항	8,006	1,190	1,189	14.9	14.8	13.3	0	0	0	58	80	78	158
마산항	3,700	174	174	4.7	4.7	5	0	0	0	0	44	29	73
대산항	8,255	2,366	2,470	28.7	29.9	26	0	104	104	0	87	82	169
포항항	24,041	7,219	7,233	30.0	30.1	26	0	0	0	32	38	57	95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30	30	60	104	25	25	50
목포항	8,022	493	468	6.1	5.8	5	10	17	27	81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649	649	19.9	19.9	22	0	0	0	35	10	11	21

## 붙임 2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 통행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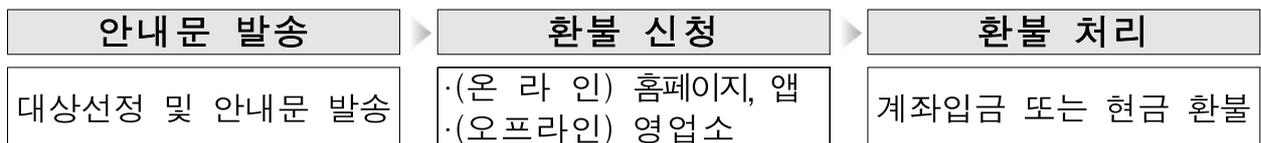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대상차량)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 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붙임 5****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사무실 연락처	e-mail주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skrkwk11@korea.kr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박진원 주무관	02-2133-4094	freedom@seoul.go.kr
경기도 물류항만과	강동주 주무관	031-8008-3864	rallyxyzgx57@gg.go.kr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김태경 주무관	051-888-7632	ktkim97@korea.kr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홍형표 주무관	032-440-3832	0326hhp@korea.kr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이미림 주무관	053-803-4041	yml4832@korea.kr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김 건 주무관	062-613-4092	gun1424@korea.kr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김태자 주무관	052-229-4114	taeyeowoo@korea.kr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박준상 주무관	042-270-5832	foolmoon@korea.kr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송창훈 주무관	041-635-2844	chsong1224@korea.kr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장은수 주무관	043-220-4265	eielectro@korea.kr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강성진 주무관	061-286-7461	gsj83@korea.kr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김대환 주무관	063-280-3621	yotta@korea.kr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55-211-4144	senatus@korea.kr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이희천 주무관	054-880-2667	yi2000@korea.kr
강원도 교통과	함석영 주무관	033-249-3544	hsy3415@korea.kr
제주도 교통정책과	김보윤 주무관	064-710-2465	kbv6089@korea.kr